

#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4,824,993	18,144,750
일반회계	565,695,799	16,970,874
특별회계	39,129,194	1,173,876
공기업특별회계	7,400,870	222,026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400,870	222,026
기타특별회계	31,728,324	951,85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89,260	44,678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59,232	43,7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19,669	30,59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22,899	24,68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2,963,659	388,910
수질개선 특별회계	7,372,984	221,19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01,96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